

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(황희의원 대표발의)

| | |
|----------|-------|
| 의안 번호 | 11162 |
|----------|-------|

발의연월일 : 2017. 12. 29.

발의자 : 황희 · 어기구 · 박재호

정재호 · 오제세 · 전현희

최인호 · 홍익표 · 권칠승

김성수 · 고용진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할 때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른
지형도면을 관보에 함께 고시하고 있으나, 해당 절차에 관한 규정이
「택지개발촉진법」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.

이에 개별법인 「택지개발촉진법」에 해당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해
당 절차를 보다 명확히 이행하도록 하고 지형도면 미고시로 인한 지
정효력 상실을 방지하고자 함(안 제3조).

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6항 본문 중 “시장”을 “관계 서류의 사본을 시장”으로, “그 내용을 송부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”를 “송부하여야”로 하고,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,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7항을 제8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에 관하여는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른다.

⑦ 제6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시장·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지정권자가 특별자치도지사인 경우에는 직접 그 내용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| | |
|----------------------|--|
| <p><u>⑦ (생략)</u></p> | <p><u>접 그 내용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</u> <u>⑧ (현행 제7항과 같음)</u></p> |
|----------------------|--|